

모바일 금융 서비스(Mobile Financial Services) D.263 권고안 승인

이병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 3 국제 부의장

1. 머리말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된 ITU-T SG 3(과금 및 회계원칙) 회의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MFS, Mobile Financial Services) 관련 최초 권고안(Recommendation ITU-T D.263, Costs, Charges and Competition for Mobile Financial Services) 제정에 대한 승인(Approval)이 이루어졌다. 본 권고안은 2015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모바일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높은 소매 및 도매 통신 요금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접근법에 대한 원칙 등을 ITU-T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했다는 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15년부터 논의된 사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2018년 및 2019년 SG 3 회의에서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간단히 서술한다.

2. 권고안 개발 배경 및 히스토리

모바일 금융 서비스 논의는 2015년 3월 ITU-T SG 3 회의에서 우간다, 가나 및 짐바브웨 등 11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동 기고서를 통해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과 원가산정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이 해당 연구는 중요한 이슈라고 지지한 반면 일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Focus Group(FG)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SG 3 내에 라포처 그룹의 설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ITU-T 사무국(TSB)은 Review Committee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Focus Group과 관련된 SG가 초기부터 의사소통(Dialogue)을 하면 해당 SG가 Focus Group의 결과물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후속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라포처 그룹 설립에 기존 Focus Group의 존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회의에 언급하였다. 또한 빌게이츠 재단은 기고서를 통해 전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안한 라포처 그룹의 설립을 지지하고, 기고서에서 하루 미화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26억 명 중 약 78%가 은행계좌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현금이나 실물자산(보석이나 가축)을 이용하거나 사채업자 같은 비공식적 사업자를 통해 금융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모바일 폰이나 전자 화폐 등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가 개인이나 사회에 제공되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SG 3에서 모바일 머니 서비스(Mobile Money Services) 라포처 그룹이 신규로 설립되었다.

2016년 2월 SG 3 회의에서는 모바일 머니 서비스 용어를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 바꾸기로 결정하여 모바일 머니 서비스 라포처 그룹의 이름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 라포처 그룹으로 변경하고 준비 중인 권고안의 용어도 통일되게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권고안 내용 중 용어 정의 부분은 FG가 작업하고 있는 용어(Vocabulary)가 정리되면 이것을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권고안 내용 중 MFS(모바일 금융 서비스)로 표현된 부분을 MFS에 관련된 도소매 통신과금(retail and wholesale communication charges related to MFS)으로 통일되게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 회의에서 여러 지역그룹에서 제안한 권고안 초안에 대해 회의에서 발표하고, 애드혹 회의를 통하여 통합된 권고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절대 대다수의 국가들이 회의에서 준비 중인 권고안 초안에 대해 결정(determine)을 원하였지만, 영국은 이머니는 국내적인 사안이라고 반대하였고, 미국은 FG에서 작업중으로 중복이 있으며, 특히 은행 업무는 작업영역 밖의 문제라고 반대하였고, 일본은 권고안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회의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 라포처 그룹과 디지털 금융 포커스 그룹(DFS FG) 간의 이미팅을 통하여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 9월 및 12월에 모바일 금융 서비스 라포처 그룹과 디지털 금융 포커스 그룹(DFS FG) 간의 이미팅의 두 번째 회의 및 세 번째 회의를 통하여, 권고안 수정작업이 TD341 Rev.1문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포커스 그룹 전문가들이 초대되어 권고안 초안에 대한 논의 및 자문이 이루어졌다.

2017년 4월 SG 3 회의에서는 2016년 2월 SG 3 회의에서 검토된 권고 초안 TD341과 TD341Rev.1 중 어느 문서를 권고안 작업을 진행할 기본문서(base text)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의장은 비록 TD341Rev.1이 합의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논의를 지속하는 관점에서 이를 토대로 향후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TD341Rev.1를 기본문서(base text)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의에서 2017년 12월 중 라포처 그룹회의(RGM)를 개최하여 본 권고안 작성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고려를 하기로 하였다.

2017년 12월 SG 3 라포처 그룹회의에서는 4월 SG 3회의에서 합의한 TD341Rev.1를 기본문서(base text)를 검토하고 본 권고안 초안의 추가 Input 기고서를 고려하여 드래프팅 세션을 통하여 작성된 권고안 초안에 대해 2018년 4월 SG 3 회의에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하기로 동의하였다.

3. 권고안 결정 및 승인 결과

2018년 4월 SG 3 회의에서는 2017년 12월 라포처 그룹회의를 통한 권고안 초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본 권고안이 결정되기 전에 본 권고안이 주는 장점(Benefit)이 원가모형을 만들고 금융기관 규제 감독 등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단점(Cost) 보다 장점(Benefit)이 클 것인 지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권고안 결정에 난항에 부딪혔으나, 미국 및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s) 서비스에 국한하여 모바일 금융 서비스 권고안 개발에 동의하여 준 것과 과거 3년 이상의 작업 노력과 합의 정신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 진영이 본 권고안 제정을 위한 투표(TAP)에 부치는 결정에 합의하여 주게 되었다.

2018년 4월 SG 3 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 16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ITU-T 사무국(TSB)은 ITU-T 회원국을 대상으로 본 권고안의 승인을 위하여 각 국에 회람문서를 통하여 2019년 4월 SG 3 회의에서 승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람문서에 총 32개국이 응답하였으며, 32개국 중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2019년도 SG 3 회의에서 승인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참고로 SG 3에서 개발하는 권고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TAP 승인 절차를 따르는데 이 경우 1개국의 반대에도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었다.

2019년 SG 3 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공식적인 논의에 앞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반대하는 국가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반대하지도 않도록 협의를 물밑에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애드혹 세션을 만들어 SG 3 차원의 합의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집트, 감비아, 가나,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등 다수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는 D.263은 2015년부터 논의가 되었으며, 지난 회의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언급하고 이번에 승인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2019년 1월 라포처그룹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권고안 내용이 충분히 안정적이므로 이번 회의에서 승인할 것을 설득한 결과 미국은 동 권고안은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연구범위를 벗어남을 지적하고, 영국은 동 이슈는 WTO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어 이중적인 논의가 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ITU는 커머스와 बैं킹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어 동 이슈를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관련 논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국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및 일본 등은 본 권고안에 대해 유보의견을 권고안에 적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대신 본 권고안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D.263의 신규 권고안의 제정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4. 맺음말

모바일 폰을 이용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개도국 등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수요가 제기되었으며, 선진국에서도 금융과 통신과의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각국의 규제 정책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서비스 과금 및 회계원칙의 개발을 위하여 ITU-T SG 3에서는 이를 연구하기 위한 라포처그룹이 2015년도에 결성되었고, 이를 통해 2016년부터 권고안 초안이 준비되고, DFS FG와 조율을 통하여 모바일 금융 서비스 라포처 그룹과 디지털 금융 포커스(DFS FG) 간의 이미팅을 결과를 반영하고, 2017년 12월 라포처 그룹회의를 통해 작업한 결과, 2018년 4월 회의에서 권고안 초안이 결정되어 2018년 7월부터 TAP 절차를 통하여 승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9년 4월 SG 회의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 관련 최초 권고안 제정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모바일금융서비스 시장의 리뷰와 시장 확정 및 경쟁상황 등이 각론으로 확장 및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